

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도시·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 
【2023. 3. 7.(화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·교통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3년 3월 7일  
전문위원 배 금 택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3 - 39
- 나. 발 의 자: 정재봉 의원 외 7명
- 다. 발의일자: 2023년 2월 24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2월 27일

## 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하고, 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,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및 용어 수정

- 나. 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·운영 조항 신설  
(안 제10조)
- 다. 방치자전거 처리의 장소적 제한 개선 및 처분방법 정비(안 제9조  
및 제12조)
- 라. 자전거의 날에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
신설(안 제18조)
- 마.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권장 규정  
신설(안 제19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 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협조부서: 교통행정과
- 다. 입법예고(2023. 2. 27. ~ 3. 6.) 결과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가. 개정 취지

-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관련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보완하고,  
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 시설물 설치·운영, 자전거의 날  
지정·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## 나. 주요 개정내용

### ○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및 용어 수정 (안 제1조~제17조)

- 자전거이용 활성화 ⇒ 자전거 이용 활성화(조례 제명 등)
- 자전거주차장 ⇒ 자전거 주차장
- 자전거보관소 ⇒ 자전거 보관소
- 자전거대여소 ⇒ 자전거 대여소
- 기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## ○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,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9조)

- “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”을 “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”으로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,
- 제2항의 무단방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
(삭제된 처분 관련 내용은, 안 제12조 ‘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’ 조항에 규정)

### ○ 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·운영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0조~제11조)

-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, 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고,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
-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

○ 무단방치 된 자전거의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12조)

- “무단방치 자전거 등의 재활용”에서 “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”으로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
- 방치자전거의 처리장소와 처분방법 등을 규정함
  - 방치자전거 처리 장소를 ‘자전거 주차장’에서 ‘도로, 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’로 확대
  -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과 재활용 생산, 생산된 자전거의 기증에 관한 사항 규정

**(참고) 조문의 변경 사항**

현 행	전부개정안	비 고
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) ① (생략) ② “무단방치 자전거 처분”에 관한 사항 규정	제9조(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) (현행 ①항과 같음) ② 삭제(제12조제2항으로 이동)	조의 제목 변경 및 조항 이동 (제9조제2항→제12조제2항) ※ 용어, 내용등의장비(변경) 사항 포함
제12조(무단방치 자전거 등의 재활용) ① ②	제12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① 신설 ② 이동(제9조제2항의 규정사항을 정비하여 규정) ③~④ (현행 ①,②항의 규정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)	

○ 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8조)

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」 제4조의2<sup>1)</sup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<sup>2)</sup>에 따른 자전거 날을 지정하여
-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○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규정 신설(안 제19조)

-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고, 개정 및 신설된 조항들은 조례로 위임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- 다만, ‘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시설물의 설치·운영’과 ‘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’에 따른 각종 행사의 실시 및 지원 시, 관련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수립과 세부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.

---

1)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2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·운영한다.  
② 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.  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□ 추진개요**

- 기 간: 2021년 9월 ~ 2022년 11월
  - 2021년 9월 ~ 11월: 1개소, 시범운영(견인차량보관소앞) 1개소
  - 2022년 5월 ~ 11월: 1개소, 공암나루 근린공원 공터(가양대교 옆)
  - ※ 2023년 4월~11월 1개소, 공암나루 근린공원 공터(가양대교 옆) 예정
- 내 용
  - 시 간: 9:30 ~ 13:30 (토,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  - 내 용: 고압스팀세척기를 이용한 자전거 세척
    - ※ 고압스팀세척기 2대 운영(1대당 3백만 원)
  - 인 력: 지역공동체 근무자 3명
    - ※ 일자리정책과 지원, 인건비 9,620원(최저임금)/시간당
    - ※ 연령별 근무시간 조정: 3시간(65세 이상), 5시간(65세 미만)
  - 세척비용: 무료

**□ 주요성과**

- 매일 20~30명 이상의 구민이 이용하며, 구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만족도 제고
- 고압, 고온의 스팀세척기를 사용하여 물 사용량이 적고,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사업



□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자전거이용시설”이란 자전거도로, 자전거 주차장,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조의2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·운영한다. ② 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)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·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
2. 연도별 활성화계획
3.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① 누구든지 도로, 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·보관·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## □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의3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,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,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1.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·모양·수량 및 제조회사명
  2.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·보관한 일시
  3.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
  4.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
- 가.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,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
- 나. 기증,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.

1. 매각. 이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 계약(隨意契約)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

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.

2. 기증

3.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,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.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